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정병기 의원 외 17명 발의(의안번호 237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의원 정병기)

### 가.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7년 12월 28일(시행 2018. 1. 1.)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가 제정되었음.
- 조례 제3조제3항<sup>1)</sup>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회기 일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조례와 불일치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에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고의 공백을 없애고,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양순임 의원 외 17명(의안번호 238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명칭인 ‘지역 서점’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띠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 안 제12조)
-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sup>2)</sup>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

2)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8. 10.]

변경함.

-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마을서점’ 을 ‘지역서점’ 으로 명칭 변경함.
  -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뜯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을 규정한 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가 2021년 8월 10일 신설됨에 따라 ‘마을서점’ 명칭을 ‘지역서점’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가. 수정 이유**

지역서점 인증기준을 좀 더 간결하게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 **나. 수정 내용**

- 안 제8조제1호 중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일 것” 을 “도서판매를 주종하는 서점”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서점일 것” 을 각각 “서점” 으로 한다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8
----------	--------

제안 연월일: 2023년 11월 24일

제 안 자: 행정기획위원회

### 1. 수정이유

지역서점 인증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8조제1호 중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일 것” 을 “도서판매를 주종하는 서점” 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서점일 것” 을 각각 “서점” 으로 한다

###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 수정안 3분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8조(인증기준) <u>마을</u> <u>서점의</u>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인증기준) <u>지역</u> <u>서점</u> ----- -----.	제8조(인증기준) ----- -----.
1. 서점업 등록업체	1. 사업자등록증의 사 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 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1. ----- ----- ----- --- <u>도서판매를 주</u> <u>종으로 하는 서점</u>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u>서점</u>	2. ----- ----- <u>서점일</u> <u>것</u>	2. ----- ----- <u>서점</u>
3. 매장규모(바닥면 적)의 50% 이상 순 수도서를 구비한 <u>서</u> <u>점</u>	3. ----- ----- ----- <u>서점</u> <u>일 것</u>	3. ----- ----- ----- <u>서점</u>
4. 성북구에서 <u>1년</u> 이 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u>서점</u>	4. ----- <u>사업자</u> <u>등록일 기준 1년</u> -- -- <u>서점일</u> 것	4. ----- ----- ----- --- <u>서점</u>
5. 불특정다수를 대상 으로 영업하고 있는 <u>서점</u> (학원, 납품위 주 업체, 유통사, 도 매업 제외, 종교전 문서점, 어린이 전	5. ----- ----- <u>서점일</u> 것-----	5. ----- ----- ----- <u>서점</u> -----

집 할인매장 등 제 외)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16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사항<sup>3)</sup>과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sup>4)</sup>을 시작으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sup>5)</sup>,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p>6)</sup>등을 채택하면서 전세계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4)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선언이 있은 지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로서 150여 개국 대표가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빈곤퇴치, 환경친화적 소비 및 생산 패턴,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 제도체제, 양성평등, 교육 등 각 분야를 넘나드는 정책 이슈(Cross-cutting issues)들로 이루어져 있음.

6)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적으로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 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sup>7)</sup>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2007년)하였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함.

○ 이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이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종식,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Global Goals”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어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됨(시행 2022. 7. 5.)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8조<sup>8)</sup>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

8)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례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9조제3항<sup>9)</sup>에 따라 5년마다 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통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p>10)</sup>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0) 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3호 (생략)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보조금 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17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 **가.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상담대상 범위를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내’ 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변경함(안 제5조)
- 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무료 운영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상담 우선 실시 부분 삭제(안 제5조)
- 라). 상담 방법을 종전의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에서 ‘서면, 유선, 인터넷 상담 등’ 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 높임(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은 관내 주민 및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14시~16시), 1인당 30분 내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민사, 가사, 채권, 임대차, 형사, 소송절차 등 전반에 걸쳐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1:1 각종 법률상담 및 행정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음.
- 2023년 예산은 600만원이며 경험이 풍부한 6명의 변호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총 46회 진행하였으며 152건의 상담 실적이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상담책임관”, “상담자”, “법률상담관”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관내” →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상담 우선 실시 부분을 삭제

- 안 제5조제3항으로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 → “상담 비용”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18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신 신 재)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안 제4조~제5조)
- 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 다).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0조)
- 마). 경영실적 평가(안 제11조)

바). 경영진단 실시(안 제12조)

사).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및 위탁(안 제13조~제14조)

아).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안 제15조~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14. 3. 24. 제정(시행 2014. 9. 25)되었으며, 법 시행령은 2014. 9. 24. 제정(시행 2014. 9. 25.)되었음.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북구가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성북구가 출연하여 2012년 설립한 ‘성북문화재단’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3. 2. 제정 · 시행)」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성북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은 현재 ‘성북문화재단’ 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 ·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성북복지재단(가칭)’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본 조례 제정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28조<sup>11)</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 제4조<sup>12)</sup>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11)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12)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 · 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 · 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 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 및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례 입법이 가능하다 하겠음.

## ○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기술하고 있고,
- 안 제2조는 ‘출자·출연 기관’<sup>13)</sup>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법 제6조제1항<sup>14)</sup>과 영 제4조제8항<sup>15)</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

###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3) 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14)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확인사항과 법 제9조제4항16)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법 제21조제1항17)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

---

· 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제9조(임원)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하게 할 때의 비용 부담, 경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sup>18)</sup>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 안 제9조는 평가의 종류로 법 제11조<sup>19)</sup>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법 제28조<sup>20)</sup>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17)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8)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

-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sup>21)</sup>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 안 제11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sup>22)</sup> 각 호의 사유

---

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5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 지급 근거나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함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이행상황 확인 ·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에서는 출자 · 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19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 가. 제안이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6,025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23)</sup>에 따라 미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동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낭비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 해됨.

---

2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sup>24)</sup>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으로, 서울 서초구에 이사회, 원장, 부원장, 5실 1사업단, 2센터로, 지방세 연구사업과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sup>25)</sup>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sup>1호</sup><sup>26)</sup>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며, 2024년 우리구 출연금은 1,602.5만원으로,

24)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5)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6)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20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 ·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민원인의 “폭행 · 폭언 등”에 대한 구체적 정의 (안 제2조)
- 나). 민원 업무 담당 보호의 의무화 및 지원사항 구체화 (안 제6조)
- 다). 민원 업무 담당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안 제7조)
- 라). 지원 신청에 따른 결정 방법 (안 제8조)

마).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안 제9조)

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규정 (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sup>27)</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sup>28)</sup>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뿐 아니라 기물

27)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28)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료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파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 등 광범위한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년 3만 8천 건, 2020년 4만 6천 건, 2021년에는 더욱 늘어나 5만 2천 건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

- 
-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 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 [제목개정 2022. 7. 11.]

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의 피해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돋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과 “폭행·폭언”에 대해 정의하였고,
- 제4조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 및 필요한 조치,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 7. 12.)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u>민원업무담당</u>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u>민원업무담당</u>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p>	<p><u>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민원업무 담당</u>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 <u>치료 등을 지원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u>민원업무 담당</u>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하는 것을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p>

- 2. 공무직 근로자
- 3. 기간제 근로자
-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 경찰
-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 처리하는 사람

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무원
- 나. 공무직 근로자
- 다. 기간제 근로자
-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 · 처리하는 사람

2. “폭행 · 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 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u>행위</u>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u>&lt;신 설&gt;</u>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 ----- --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 ----- 시책----- -----.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제5조(실태조사)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 -----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삭 제>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심리상담 지원

2.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  
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  
간 및 공간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부터 피해 치유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  
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  
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  
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  
률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  
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의  
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  
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삭 제>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

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  
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  
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  
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  
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  
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 ·  
단체 등에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  
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  
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p><u>2. 비상벨 설치</u></p> <p><u>3.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u></p> <p><u>RS 음성안내</u></p> <p><u>4. 녹음 전화 설치</u></p> <p><u>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 유리) 설치</u></p> <p><u>6.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u></p> <p><u>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u></p>
<u>제9조(지원 신청)</u> <u>제5조</u> 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7조(지원 신청)</u> <u>제6조</u> ----- ----- ----- -----.
<u>&lt;신 설&gt;</u>	<u>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u>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제10조(지원 결정)</u> ① 구청장은 <u>제5조</u> 에 따른 지원 신청을 <u>받은 경우</u> 특별한 사유가 <u>없으면 해당</u>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u>제8조(지원 결정)</u> ① ----- <u>제7조</u> ----- <u>받았을 때</u> ----- <u>없는 한 지원</u>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② ----- 제6조제  
1항제4호의 -----  
-----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  
서장의 판단하에 신청 절차 없  
이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휴식  
시간의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  
단하에 당일 내 휴식 시간 연장  
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21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 나).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 별표4)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
- 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안 제24조제2항제3호, 안 제24조제9항, 안 제24조제12항)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수정
  -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대상 명확화
  -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추가 신설
- 라).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4조제15항)
- 마).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바). 기타 운영상 보완사항 수정
- 법령 폐지 등으로 인한 현행 법률 조항 수정(안 제20조의3, 안 제23조제11호, 안 제24조제8항)
  -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안 제24조제2항제2호, 안 제24조제7항)
  - 겸직허가 절차 관련 단서 조항 삭제(안 제28조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시행 2023. 10. 19., 2023. 7. 18.,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

대와 법령 폐지 등으로 인해 인용 법률 조항 현행화 등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5조제4항 신설은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4조제4항<sup>29)</sup>이 신설(2023. 6. 13.)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18조는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안 별표4)로 확대하는 것임
- 제20조의3 :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 →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변경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2019. 6. 18.)되면서 종전 제3조의4가 제3조의5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20조의4(연가의 저축)은 안 제15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새로 반영한 것임.

---

29)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 안 제24조는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2항제2호 : “만 40세” → “40세”

제7항 : “만 5세” → “5세”로 변경한 것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한 것임.

- 제2항제3호 : “사산” → “사산 또는 조산”으로 범위 확대

• 제8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p>30)</sup> 제9조제1항에 따라”로 변경한 것은 2021년 1월 12일 설치령이 법으로 제정(시행 2021. 7. 13.)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제9항 :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sup>31)</sup>로 변

---

### 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88호, 2021. 1. 12., 제정]

#### ◇ 제정이유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운영에 있어 특수성을 갖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

경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을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자녀로 확대함.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14조제1항<sup>32)</sup>에 따른 대규모 재난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대상을 명확히 함.

- 제12항 : 5년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도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

---

#### 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32)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 ·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 제15항 심리안정휴가 신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33)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 사고를 경험했을 경우와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 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 가능
- 안 제28조제1항 : 겸직허가 절차 관련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33)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2022. 1. 11.>

-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 · 인명구조 · 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 · 진화 · 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 국외에서 천재지변 · 전쟁 · 교전 · 폭동 · 납치 · 테러 · 감염병, 그 밖의 위난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 · 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 · 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하는 소속 행정기관에서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의 단서 조항 삭제

- 안 별표3 :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 산 기준 정비,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22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과 시행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에 따라 정비 (안 제1조 ~ 제2조)

- 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안 제3조)
- 라). 경비 지원 절차·범위 및 지원 중단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10조)
- 마).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를 위한 교육, 포상 및 준용 사항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기 시행 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법에 따라 정비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방범대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 (현행) 제3조(조직 및 구성), 제4조(임무), 제5조(활동범위), 제6조(신고 등), 제8조(자율방범대연합회)는 법 제3조(조직 및 구성 등)<sup>34)</sup>, 법 제7조(자율방범활동)<sup>35)</sup>, 법 제4조(신고)<sup>36)</sup>, 법 제12조(중앙회 · 연합회 · 연합대

- 
- 34)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35)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36)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 등)37)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 안 제4조(경비 지원 등) : 상위법령(법과 시행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제2항을 개정하여 방법대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 ~ 제9조 : 경비 지원을 위한 절차, 지원 중단 사유, 정산방법, 지도 및 감독 강화, 지원 금액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 ~ 제13조 : 자율방법대원들을 위한 교육, 포상 사항 등을 규정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충실하려 하지만, 현행 법률과 시행령 등이 자율방법대 등의 신고, 관리 및 감독 등의 권한은 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도록 하고, 경비 지원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로 치우쳐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위법과 기 시행

---

37) 제12조(중앙회 · 연합회 · 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법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법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법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시 · 도자율방법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 · 군 · 구에 시 · 군 · 구자율방법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 ·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u> <u>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u> <u>지원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u> <u>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u> <u>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u> <u>시 성북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u> <u>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u> <u>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u> <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u> <u>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u> <u>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u> <u>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u> <u>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u> <u>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
<u>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성북</u> <u>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u> <u>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u> <u>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u> <u>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u> <u>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u> <u>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u> <u>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성북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 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

말한다.

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성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 · 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

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

청서

2.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

관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

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

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

율방범대 설립 · 등록 신고서

(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해

당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 ·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

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

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삭 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

	<u>산서</u>
	2. <u>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u>
	3. <u>방법 활동 근무일지</u>
<u>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법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4조(경비 지원 등) ① ----- 방법대 및 연합대의 ----- ----- -- 경비의 일부-----.</u>
<u>1. 복장 및 장비 구입비</u>	<u>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u>
<u>2. 방법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u>	<u>2.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u>
<u>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법순찰 차량유지 경비</u>	<u>3. 방법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u>
<u>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u>	<u>4.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u>
<u>5. 상해보험 가입비</u>	<u>&lt;삭 제&gt;</u>
<u>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u>	<u>&lt;삭 제&gt;</u>
<u>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	<u>&lt;삭 제&gt;</u>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지역 및 실적, 자율방법대원 수와 전년도</u>	<u>②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u>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 ·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  
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  
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  
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  
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자  
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  
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를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설립 · 등록 신고서를 구청장에

둘 수 있다.

<삭 제>

<삭 제>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회 설립·등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법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  
지급한 -----  
-----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

	<p><u>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 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제10조(교육) 구청장은 <u>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 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p><u>제10조(교육) ----- 경찰서와 협 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 -----.</u></p>
제11조(포상) 구청장은 <u>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 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자율 방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u>	<p><u>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 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 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u></p>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 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p><u>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 령에 따른다.</u></p>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p><u>&lt;삭 제&gt;</u></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23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1. 서울시 다자녀 기준 및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에서 18세로 완화함에 따라 다등이 행복 카드 소지자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방식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
2.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 2023. 7. 10.)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별표2 개정
-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됨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동이 행복카드<sup>38)</sup> 소지자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

38) 서울 다동이 행복카드

### ▶ 조건

- 발급 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 (막내자녀 18세 이하)
- 발급 조건: 신청 당시 부 혹은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으로 확인)  
서울시 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도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으로 확인)
- 카드 종류: 신용, 체크, 신분 확인용 카드 (앱카드)

### ▶ 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카드 유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신분 확인용 카드 (실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신분 확인용 카드 (앱카드) :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검색 및 다운로드, 가입 후 발급 (모바일카드 클릭)

수강료 감면 방식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법령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 메인화면에서 ‘다동이행복카드’ 클릭해 보여주고 혜택받으시면 됩니다.

### ▶ 혜택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등 혜택
  1. 서울상상나라: 두 자녀 이상 무료입장
  2. 한강 시민공원: 수영장 50%, 눈썰매장 50% 할인
  3. 서울대공원: 입장료 (동물원, 테마가든) 면제
  4.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
  5. 서울시립미술관: 입장료 면제 (단, 특별전시는 제외)
  6. 세종문화회관: 자체 제작 및 기획공연 구매 시 10~40% 할인
  7.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두 자녀 이상 가정 이용 시 이용료 50% 할인  
(이용 전 해당 시설 할인 적용 사항 확인 필수)
  8. 서울시립체육시설 (잠실운동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  
개인 연습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이용 전 해당 시설 할인 적용 사항 확인 필수)
  9.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10. 서울시립 공영주차장: 두 자녀 주차료 50% 할인  
(자치구 운영주차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시설물 소관 주차장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 11개 한강공원 내 주차장: 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12. 하수도 요금: 30%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 ▶ 협력업체 할인

1. N서울타워: 전망대 이용권 가족 (직계) 1인당 10% 할인
2. 에버랜드, 케리비안베이: 세 자녀 이상 이용권 20% 할인
3.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1인당 30% 할인
4. 국립극장: 정기, 특별, 기획공연, 관람 요금 20% 할인

### ▶ 다동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seouli.bccard.com/app/iseoul/index.do>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변경,

- 안 제5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1조 : 법 제29조제2항 → 법 제40조제5항으로
  - 안 제13조제1항제5호 : 법 제29조제2항 → 법 제40조제5항으로 변경.
- 
-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중 감면자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방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 심사 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24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개정 2014.5.28.)
- 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

으며,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방송통신위원회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2015.12.)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

- 운영비 분담비율 :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기능

- 시청자 미디어교육·체험 및 홍보 지원
-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 시청자 권리 증진 활동 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sup>39)</sup>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 한다)는 2015. 12. 15. 시청

---

3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는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sup>40)</sup>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제1항제2호<sup>41)</sup>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를 방송통신위원회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분담하고 있음.

- 2024년도 미디어센터의 출연금<sup>42)</sup>은 전년도 2억9,594만원에서 384만원감

40)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5. 12. 22.>

41)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42)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금(2024년도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인건비(A)	경상비(B)	운영비(A+B)	비고
----	--------	--------	----------	----

액된 2억9,210만원이 편성됨.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방송법」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총 소요액	770.9	689.6	1,460.5	
방통위 분담	610.3	266.0	876.3	운영비의 60%
서울시/성북구 분담	160.6	423.6	584.2	운영비의 40%

#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보고서

2023년 12월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25호)
- 나. 회부일자: 2023. 11. 14.
- 다. 상정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11. 24. 상정 · 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문화국장 한재현)

### 가. 제안이유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의 발굴
  - 성북구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을 추구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성북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과 수요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 문화예술진흥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추구

나).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차별화된 성북 대표 지역문화 축제, 공연 및 전시 진행
-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네별 우리 예술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화 및 예술인·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확대

다). 문화시설 운영관리(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문화 행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구민의 문화예술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43)</sup>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의 문화예술을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문화자원 발굴

---

4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및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도서관운영 및 관리, 아리랑시네센터 운영 및 영상미디어 사업, 성북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sup>44)</sup>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sup>45)</sup>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도 출연금은 정규직 총 인건비, 신규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35.11 %인 9억537만원이 증액된 34억8,392만 원이 편성되었음.
-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

44)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5)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